아리아리! 정선
the mecca of arirang, jeongseon

정 선 군

군 보

http://www.jeongseon.go.kr/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526호 2020. 4. 22.(수)

【고 시】

○ 정선군 고시 제2020-81호 정선군계획시설(공공청사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(2차)……3

○ 정선군 고시 제2020-82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……5

○ 정선군 고시 제2020-91호 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[승인] 고시……7

【공 고】

○ 정선군 공고 제2020-459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광장,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민 공람·공고……8

○ 정선군 공고 제2020-477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공원) 결정(변경)(안)(남부권) 공람.공고……9

❍ 정선군 공고 제2020-484호 공시송달 공고……10

❍ 정선군 공고 제2020-515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……12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20-81호

정선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(2차)

「건축법」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 인가한 정선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0일

정 선 군 수

1. 위 치 :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16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가. 종 류 :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
 나. 명 칭 : 정선경찰서 청사 신축사업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없음)

시설명	군계획시설결정		실시계획 인가		비 고
	세부시설명	면 적	면 적	규 모	
공공청사	정선경찰서	8,739㎡	8,739㎡	- 건축면적 : 2,163.40㎡ - 연면적 : 6,926.13㎡ - 층수 : 지상4층	

4. 사업시행자 및 주소(변경없음)
 가. 성 명 : 강원지방경찰청
 나. 주 소 :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)
 가. 착 수 일 : 실시계획인가일
 나. 준공예정일 : 당초 2020. 4. 30 → 변경 2020. 8. 30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(변경) : 붙임(변경없음)

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 사항 없음

정선군 고시 제2020-82호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
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4월 10일

정 선 군 수

가. 결정(변경)취지 : 정선읍 북실리 일원 소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비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4-3번지

다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○ 공원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⑤	북실2	소공원	정선읍 북실리 744-3번지	-	증) 1,382.8	1,382.8	금 회	-

○ 공원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⑤	북실2 소공원	· 공원 신설 - A=1,382.8㎡	·북실리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비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라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도 : 실음생략

◉ 토지조서

(단위 : ㎡)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	편입 면적	소 유 자		관 계 인		소유권 이외의 권리
						성명	주소	주소	성명	
계		2필지		8,844	8,739					
1	정선읍 봉양리	316	대	8,767	8,662	국(경찰청)				
2	정선읍 봉양리	403-10	대	77	77	정선군				

정선군 고시 제2020-91호

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[승인] 고시

농촌 중심지의 중심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「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」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6일

정 선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
2. 사업의 목적
 ❍ 임계면 중심지 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역량 및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 삶을 질 향상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.
3. 사업의 내용 및 구역
 ❍ 사업구역 :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외 배후마을 일원
 ❍ 사업내용
  - 기초생활기반확충 : 임계건강공동홈 321㎡, 백두대간 임계역사문화관 497㎡
  - 지 역 경 관 개 선 : 백두대간 능금뙈기쉼터, 능금가로길, 임계천 생태친수공간
  - 지 역 역 량 강 화 : 주민교육 및 선진지견학, 지역활성화사업, ICT 및 재난대응체계구축, 마을경영지원 등
4. 사 업 비 : 5,846백만원(국비 4,092, 지방비 1,754)
5. 사업기간 : 승인일로부터 2021.12.31.까지
6. 사업시행자 : 정선군수
7. 위(수)탁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사

※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 (도시과 도시개발 ☎033-560-2464)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20-459호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광장,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민 공람·공고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광장,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4월 10일

정 선 군 수

1. 공람목적 :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광장,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민의견 청취

2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52번지 일원

3. 군관리계획(시설:광장 및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조서 : 게재 생략 (공람장소 비치)

4. 군관리계획(시설:광장 및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도 : 게재 생략 (공람장소 비치)

5. 관련도서 비치 및 공람장소 : 정선군청 도시과, 사북읍사무소

6. 열람기간 :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14일(2020. 4. 10 ~ 4. 27)

7.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: 정선군청 도시과 및 사북읍사무소에 서면 제출

8. 기타사항 :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(033-560-21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 본 공람·공고(안)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,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정선군 공고 제2020-477호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공원) 결정(변경)(안)(남부권) 공람.공고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공원) 결정(변경)(안)(남부권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.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4월 16일

정 선 군 수

1. 공람목적 :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공원) 결정(변경)(안)(남부권)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
2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도시지역(고한사북, 신동, 증산(남면)) 일원
3. 규 모 : 변경 - 80개소 (도로 80개소)
   폐지 - 7개소 (도로 6개소, 공원 1개소)
4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공원)결정(변경)(안)(남부권) 도서 : 게재 생략(공람장소 비치)
5.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: 정선군 도시과, 고한읍사무소, 사북읍사무소, 신동읍사무소, 남면사무소
6. 열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(2020. 4. 16. ~ 2020. 5. 01.)
7.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: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해당 읍·면사무소에 서면 제출
8. 기타사항 :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(033-560-21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아울러 본 공람·공고(안)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,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정선군 공고 제2020-484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4월 13일

정 선 군 수

1. 제 목 :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2. 공고대상자 및 내역

성 명 (업체명)	주 소	통지일자	위반장소	위반내용	과태료금액	반송사유
이○만	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서동로 2○○7	20.04.13.	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서동로 2○○7 일원	※ 참조	500,000원	폐문부재 등

※ 위반내용 : 생활쓰레기 불법소각

3. 공고기간 : 2020. 04. 13. ~ 2020. 04. 27. (15일간)

4. 공시송달 내용

○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아울러,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8조에 따라 20% 감경받을 수 있으며, 향후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 체납할 시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%의 가산금 부과,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최고 60개월까지 1.2%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,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(압류)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제6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 통지하오니 2020년 04월 27일까지 정선군청 환경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문의처 : 정선군청 환경과(☏ 033-560-2359, fax 033-560-2589)

정선군 공고 제2020-515호

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4월 22일

정 선 군 수

1. 개정이유

가. 2016. 1. 1. 전입세대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하여 전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 2016. 1. 1.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

나. 2016년 이전 출생아들은 전입 후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따른 불이익 해소 및 정선군 인구늘리기 시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세대 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삭제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(참조: 여성청소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의견 제출 및 문의처

○ 주소: (우 26131)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

○ 전화: 033-560-2977

○ 팩스: 033-560-2141

○ 이메일: soul35h@korea.kr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고
	찬 성	반 대		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조례 제2468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조례 제2468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(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.	조례 제2468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<삭제>